##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약칭: 공공기록물법 시행령)



[시행 2024. 5. 17.] [대통령령 제34487호, 2024. 5. 7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정책기획과) 042-481-622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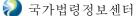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영은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10. 5. 4., 2011. 12. 21., 2016. 4. 26., 2020. 3. 31., 2022. 7. 5., 2023. 6. 27.>

- 1. 삭제<2020. 3. 31.>
- 2. "전자기록물"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·수신 또는 저장 되는 전자문서,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.
- 3. "비치기록물"이라 함은 카드、도면、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、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 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(제3조 각 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. 이하 "처리과"라 한다)에서 계속 비치、활용하여야 하 는 기록물을 말한다.
- 4. "기록물철"이라 함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.
- 5. "정부기능분류체계"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표준화한 기능분류체계와 각 부처의 과제 관리를 위한 목적별 분류체계로 구성된 분류체계를 말한다.
- 6. "단위과제"라 함은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(小機能)을 유사성,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, 절차별로 세분한 업무를 말한다.
- 7. "전자기록생산시스템"이라 함은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, 업무관리시스템, 행정정보시스템(제3조 각 호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에 준하는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
- 8. "기록관리시스템"이라 함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
- 9. "영구기록관리시스템"이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- 10. "웹기록물"이란 공공기관에서 운영、활용하는 웹사이트、블로그、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등 웹을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말한다.
- 11. "행정정보 데이터세트"란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에 서 생산, 수집, 가공, 저장, 검색, 제공,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, 숫자, 도형,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.
- 12. "기록관리 메타데이터"란 기록물의 내용, 맥락, 구조 및 기록물관리 이력과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는 데이터 를 말한다.
- 13. "장기보존패키지"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함께 묶은 것을 말한다.
  - 가. 전자기록물
  - 나. 기록관리 메타데이터
  - 다. 보존포맷(기록물 보존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  - 라. 행정전자서명(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등 진본확인 정보
  - 마. 그 밖에 전자기록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정보

제3조(공공기관의 범위)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



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<개정 2010. 5. 4, 2014. 11. 4, 2020. 3. 31.>

-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기관
- 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3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、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、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
- 4.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(다만,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、 협회를 제외한다)
- 5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、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
- 제4조(기록물 관리의 원칙) ①기록물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(眞本性)、무결성(無缺性)、신뢰성 및 이 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영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,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5. 21.>
  - ②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, 그 결과를 기 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③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、관리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, 기록관리시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、운영하여야 하며, 전자 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전자화계획을 수립ㆍ시 행하여야 한다.
  - ④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물 생산,관리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한 기록 관리 메타데이터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,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、관리해야 한 다.<신설 2020. 3. 31.>
- 제5조(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)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 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취하여 전자기록물의 생산ㆍ이관ㆍ보존 및 폐기 등 기록물관리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,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<개정 2007. 7. 18., 2010. 5. 4.>

##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

- 제6조(중앙기록물관리기관)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원으로 한다.
  -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간 관리시설을 설 치 · 운영할 수 있다.
  - 1.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기록물의 관리
  - 2. 폐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기록물의 관리
- **제7조(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)** ①국회、대법원、헌법재판소、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 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공개、활용, 보존처리, 보존비용 등 기록물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 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- 제8조(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) 특별시、광역시、도교육감 또는 특별자치도교육감, 시장、 군수、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 도 중에 관할 특별시,광역시,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,도"라 한다)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야 한다.<개정 2010. 5. 4.>
- 제9조(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) ①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는 시·도 또는 시、군、구(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) 단위로 한다. 이 경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76 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보며, 같은 법 제177조부터 제1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.<개정 2010. 5. 4., 2021. 12. 16., 2022. 7. 5.>
  -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,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 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